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111797 판결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손건훈

피 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이수정

별지